

1. 개정이유

방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 8 월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(법률 제19583호)하고 방위산업발전협회의 참석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 제34376호)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 수행절차 등 마련

나. 방위산업발전협회 실무협의회 참석위원 확대 등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방위산업의 날 등) ① 법 제17조2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
2.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
3.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

4. 그 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7월 8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7월 8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

업부, 우주항공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국무조정실, 중소벤처기업부”를 “국무조정실”로 한다.

2.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

나.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방위산업의 날 등) ①</u> <u>법 제17조2에 따른 방위산업의</u> <u>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</u> <u>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</u> <u>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1.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</u> <u>2.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</u> <u>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</u> <u>3.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</u> <u>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</u> <u>대한 격려 및 포상</u> <u>4. 그 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범</u> <u>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</u> <u>행사</u> <u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</u> <u>련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제1항에</u> <u>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필</u> <u>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</u> <u>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7월 8일</u> <u>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</u> <u>다. 다만, 7월 8일이 토요일이나</u> <u>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</u> <u>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.</u>

제8조(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
협의회) ① (생략)

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방위사
업청장이 되고, 실무협의회 위
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, 과학기술정보통
신부, 외교부, 국방부, 산업통
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의 고
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
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나
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
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
는 사람

<신설>

2. (생략)

<신설>

제8조(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
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산업통
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우
주항공청 -----

2.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
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(將
星級)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
하는 사람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사람으로서 방위사업
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
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
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
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
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

3. <u>국무조정실, 중소벤처기업부</u> 등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실무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 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 이 나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(생 략)	<u>사람</u> <u>나.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</u> <u>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</u> <u>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</u> <u>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</u> <u>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</u> <u>사람</u> 5. <u>국무조정실</u> ----- --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